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신재활시설 명칭 변경 및 설치·운영 의무화 등〉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303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1. 정신재활시설 명칭 변경 및 설치·운영 의무화 등	2
2. 정신건강복지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국·공유 재산 대부 등 특례 신설 ..	13

I. 개요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30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0.

(3) 회 부 일 : 2025. 2.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국 104개 시·군·구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II. 검토 의견

1. 정신재활시설 명칭 변경 및 설치·운영 의무화 등

□ 개정안은 정신재활시설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u>정신재활시설</u> 을 말한다. 5. ~ 6. (생략) 7. “ <u>정신재활시설</u> ”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정신건강복지기관</u> -----. 5. ~ 6. (현행과 같음) 7. “ <u>정신건강복지기관</u> ”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회복 및 사회참여를 위한 고용·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정신질환자등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절차조력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8. (생 략)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관을 말한다.

8. (현행과 같음)

제26조(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

운영) ① -----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정신건강복지기관 소재지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신건강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
기관-----
-----.

⑤ -----
-----정신건강복지기관-----

-----.

⑥ 제5항-----

-----.

제27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①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제27조(정신건강복지기관의 종류)

①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서비스제공기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 이용서비스제공기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신건강복지기관-----

-----.

제28조(정신건강복지기관의 폐지·

휴지·재개신고) -----정신건강복지기관-----

-----.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용·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

-----.

제29조(정신건강복지기관의 폐쇄 등) ① -----
-----정신건강복지기관-----

-----.

1. (현행과 같음)

2. -----정신건강복지기관-----

② -----
-----정신건강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기관의-----
-----.

③ -----
-----정신건강복지기관-----

하여야 한다. 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29조제2항에 따른 <u>정신재활시설</u>의 폐쇄명령 5. (생략) 제81조(비용의 징수) 정신요양시설과 <u>정신재활시설</u>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u>정신재활시설</u>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 제32조(청문)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정신건강복지기관</u>----- 5. (현행과 같음) 제81조(비용의 징수) ----- ----<u>정신건강복지기관</u>----- ----- -----.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u>정신건강복지기관</u>----- ----- ----- ----- -----. ----- ----- ----- ----- ----- ----- -----
--	---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같음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2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u>정신재활시설</u>을 설치·운영한 자 4. ~ 7. (생략)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벌칙)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정신 건강복지기관----- 4. ~ 7. (현행과 같음)
--	---

□ 정신재활시설은 제26조¹⁾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²⁾,

법령에서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등 세부적인 시설들이 분류되어 있고,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 36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정신재활시설”의 정의임.

< 정신재활시설 현황 >

(2024.6.30.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수	주요 기능
생활시설		17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재활훈련 시설 (318)	주간재활시설	90	정신질환자들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 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193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 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7	지역 내 정신질환자들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직업재활시설	17	정신질환자들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작업적응, 직무기능 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11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1	정신질환자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중독자재활시설		4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종합시설		20	상기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들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계		360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 명칭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변경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넘어서 고용·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정신질환자들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절차조력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이 사용하려고 하는 “정신건강복지기관”이라는 명칭은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체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하여 혼선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으며,

<정신건강증진기관·시설 현황>

(2024.6.30.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개 소 수	주요 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			263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정신재활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조정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정신 의료 기관	국·공립	67	-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민간	2,135	-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요양시설		59	-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정신재활시설		360	-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요양후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0	- 중독예방, 중독자 상담·재활훈련
자살예방센터(독립형)			6	- 자살예방사업, 상담지원 등
계			2,950	

* 자료: 보건복지부(2023년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기준)

안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종류로서 ‘재활훈련시설’을 ‘이용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는 서비스 이용자를 훈련의 대상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담감을 순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이용서비스’가 무엇인지 쉽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안 제26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하위 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진 광역자치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현재 설치된 360개소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아도 서울은 102개소, 울산·세종·강원·전남은 각 3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등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설치·운영 의무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시·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

(2024.6.30. 기준, 단위: 개소)

시·도	총계	공동 생활 가정	주간 재활 시설	종합 시설	생활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지역 사회 전환 시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시설	중독 자 재활 시설	생산 품 판매 시설
계	360	193	90	20	17	17	7	11	4	1
서울	102	54	25	1	-	7	4	8	3	-
경기	70	47	13	1	1	4	3	1	-	-
인천	14	10	4	-	-	-	-	-	-	-
부산	18	5	9	1	-	3	-	-	-	-
대구	16	6	6	3	-	-	-	-	1	-

광주	11	3	7	-	1	-	-	-	-	-
대전	31	22	5	2	2	-	-	-	-	-
울산	3	-	3	-	-	-	-	-	-	-
세종	3	1	-	-	1	1	-	-	-	-
강원	3	1	1	-	1	-	-	-	-	-
충북	10	5	3	1	1	-	-	-	-	-
충남	22	16	1	1	4	-	-	-	-	-
전북	24	10	4	6	2	1	-	-	-	1
전남	3	1	-	1	1	-	-	-	-	-
경북	18	10	4	1	3	-	-	-	-	-
경남	6	1	3	2	-	-	-	-	-	-
제주	6	1	2	-	-	1	-	2	-	-

*자료: 보건복지부

□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 17호³⁾의 개정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동의하나, 새로운 명칭과 기능의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정신재활시설의 보편적 설치를 위한 의무화에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복지시설 설치·운영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기관이 절차조력 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절차조력⁴⁾은 2026년 1월 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제공 주체의 자격 등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인 사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개정안에서 쓰려는 ‘정신건강복지기관’은 현행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명칭이 유사하여 혼돈될 우려가 있음.
인권단체 파도손	○명칭 변경은 기대 실익이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하나인 정신재활시설이 절차조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어색한 측면이 있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 ‘시설’이라는 용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장소 등을 가리키고 현행 용어는 치료와 재활에 초점이 맞춰져 협소한 의미이므로,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과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있음.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3.] [법률 제1990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38조의2(절차조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조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2. 정신건강복지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국·공유 재산 대부 등 특례 신설

- 개정안은 정신재활시설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변경하고, 그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공유 재산 대부 등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79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부족한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보건·복지분야의 입법례에서도 국·공유 재산의 대부 등에 있어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특례 조항 입법례 비교 >

「아동복지법」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u>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법」 제10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u>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 특례는 동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한하여 정하도록 규정⁵⁾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을 위한 특례를 두기 위하여는 동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발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정신재활시설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용 인원, 종사자 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설치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을 통하여 시설의 개소 수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다만,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동시 개정도 필요해 보임.
행정안전부	○특정 시설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 운용 관점에서 손실 발생, 다른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공유재산 정책 목적 활용에 대한 제한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에 대하여는 그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 공유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며, 해당 공유지를 다른 정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매입하여 축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498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한을 별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